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5.

발 의 자 : 김교홍 · 서미화 · 허종식
모경종 · 문진석 · 강준현
이강일 · 황 희 · 김 윤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,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,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4제3항

등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③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그 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1.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2. 환자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
3. 환자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치료 및 간호를 방임하는 행위
4. 환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5. 환자에게 폭언·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제47조의4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의4(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7조의4(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그 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.</u> 1. <u>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</u> 2. <u>환자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</u> 3. <u>환자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치료 및 간호를 방임하는 행위</u> 4. <u>환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</u>

③ (생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·범위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5. <u>환자에게 폭언·협박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-----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